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공직자 범위에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추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9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고위공직자 범위에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과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 2 –

파. (생략)	파. (현행과 같음)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광범위하므로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 엄격한 행위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는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8조)¹⁾,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의하지 않고서 채용할 수 없으며(법 제11조)²⁾,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12조)³⁾.

-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좁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청회⁴⁾ 및 법안소위⁵⁾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 대상자 규정을 차용하게 되었음.

< 정부안 및 의결안 고위공직자 범위 비교 >

정부안 ('20.6월 국회 제출)	의결안 ('21.4.29.)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자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 공개대상자

○ 이에 따라,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공청회(2021.3.17.)

“정부안은 고위공직자에게는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또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야 한다. 추가로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으로 한 것도 너무 적용 범위가 좁다. 장차 「공직자윤리법」과 맞춰 1급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5) 제21대국회 제38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2021.3.18.), 제21대국회 제38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2021.3.23.), 제21대국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2021.4.12.) 회의록 등 참조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등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됨6).

□ 그런데,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반’7)의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협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장치가 작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7)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 참여하여 2026년 1월 2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 9일 결과를 발표함.

동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⁸⁾.

- 구체적으로, 중앙회 전무이사(상임이사) 등은 인사권이 없음에도 자회사 인사에 개입하고 상호금융부문의 예산편성까지 총괄·조정하여 법상 보장된 사업부문별 독립성을 침해함. 또한, 지역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배우자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 체결, 채용 비리 등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⁹⁾.

□ 이에,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비리 관련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농어업인을 위한 공공적 자금을 운용하고 국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회 상임이사과 조합감사위원장은 사업 운영·집행 또는 조합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권자로서 예산·계약·감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위험이 존재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이해충돌 위험의 정도,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최소한의 수단인지 여부 및 기관 간 규

8)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2026.3.9., p. 1

9) 앞의 보도자료(2026.3.9.), pp. 3, 7~9

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¹⁰⁾.

□ 첫째, 고위공직자 지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책이 가진 실질적인 역할·권한의 범위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회 회장¹¹⁾ 및 상임감사¹²⁾는 각각 중앙회를 대표하고 감사하는 역할로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중앙회 상임이사¹³⁾는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계약·예산 등 직

10)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12) 「**농업협동조합법**」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54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감사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감사위원회규정 및 감사규정의 제정과 개폐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5.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경영 목표의 설정
-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나 수의계약 제한 등의 규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반면, 이들은 분장된 사업부문에 대하여 집행·운영하는 내부 집행기관이

가. 사업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
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
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
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조합감사위원장¹⁴⁾은 전국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며 감사 업무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회원조합 전반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면, 조합감사위원장은 상임감사와 달리 중앙회의 임원¹⁵⁾이 아니며, 중앙회가 아닌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요 직위별 비교 >¹⁶⁾

구분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인원	역할	고위공직자 여부
회장	제127조제1항	1명	중앙회 대표	○
상임감사	제129조제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54조의2	1명	중앙회 감사	○
상임이사	제127조제3항 및 제4항	2명 (상호금융대표 이사, 전무이사)	중앙회 사업 집행	×
조합감사 위원장	제127조제6항	1명	조합 감사	×

자료: 「농업협동조합법」 요약 정리

14)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15)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16) 수협중앙회 역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유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다만, 상임이사는 1인으로, 지도경제사업 소관업무 처리 및 해당 업무에 대하여 중앙회를 대표함.)

□ 둘째, 고위공직자로 지정되는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받게 되므로, 농협 비리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최소한의 규제인지, 다른 제도개선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선, 내외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발표하고 있는 바, 비위 등의 발생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조직 구조 개편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할 영역은 아닌지,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와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논의된 개혁 방안 중에는 중앙회 내부의 감사·조합감사 기능을 통합하여 별도 특수법인으로 설립((가칭)농협감사위원회)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해당 농협감사위원장과 상임이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¹⁷⁾되어 있으므로 후속 논의 사항 및 지배구조 개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당정,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 추진”, 2026.3.10.

□ 셋째,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의 임원과 비교했을 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만 과도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기관 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¹⁸⁾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기관장(회장)만 고위공직자로 지정되어 있는 바¹⁹⁾, 타 특수법인과의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② 법 제2조제3호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

격차를 심화시키는 과잉 규제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특수성이 기관 간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업·수산업 정책자금의 공급·관리 등 국가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금융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²⁰⁾²¹⁾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임[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21)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HD현대에 이어 재계 순위 9위를 유지하는 등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음.

<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공정거래위원회, 2026.4.) >

(단위: 개, 십억 원)

순위	기업집단명	계열회사수	공정자산총액
1	삼성	67	695,785
2	에스케이	151	421,979
3	현대자동차	74	320,845
4	엘지	63	186,279
5	한화	116	149,605
6	롯데	98	142,420
7	포스코	51	140,584
8	HD현대	29	89,180
9	농협	58	83,504
10	지에스	104	80,423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공공기관별로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임.

□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행법상 이미 핵심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규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상임이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방지하려는 위험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있고, 조합감사위원장은 경영적 집행권이 없는 직책임에도 고위공직자 지정을 통한 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에 제한 요소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